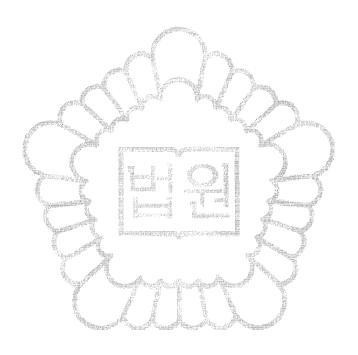
2010나32902

판 결 서



서울고등법원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3290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윤종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마상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중석 (540927-112091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5-3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8가합1650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012-0025260571-75281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2-0025260571-75281 위반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 / 16



(1)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3 내지 11, 13, 15 내지 33,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명예훼손 사실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7. 11. 하순경 인터넷 언론사인 주식회사 프레시안에 근무하는 기자 성현석에게 '원고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원고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고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아닌지 의심된다, 원고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 매출 사이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처럼 원고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였고, 2007. 11. 26.경 그 정을 모르는 성현석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프레시안의 인터넷 사이트(www.pressian.com)를 통해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지급 의혹, [단독] 2005년 6개월 동안에만 1조 3천억 원...비자금 조성?'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피고의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치 원고가 실제로 수출 운임의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포함한 별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이러한 사실이모두 유죄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2009. 6. 19.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283호), 항소심에서는 위 유죄 부분과 함께 이에 병합된 별개의 근로기준법

2012-0025260571-75281 위번조 방지용 비코드 입니다. 3 / 16



위반죄, 사기죄를 합하여 2011. 1. 1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가(부산지방법위 2009노2212, 2992호), 상고심에서 2011. 5. 26.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1도1729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1, 13, 14, 19, 21, 23 내지 27, 33, 36 내지 39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수출업 체들은 UN 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통계청 고시인 '무역통계작성 및 활용 에 관한 고시' 제2 내지 6조에 따라 수출신고시에 실제 거래형태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나,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 조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기준으로 수 출가격을 신고하여 왔는데 위 고시가 1990년경 폐지된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대부분 의 운송거래는 월간계약 또는 연간계약으로 체결될 뿐만 아니라 수출운임은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계산되고 수출 물량의 중량 또는 용적은 공항에 도착한 후 계량이 완료되 어야 확정되며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이후에 업체별 운임이 확정되기 때문에 수출신고 서 작성 당시에는 정확한 운임을 확정할 수 없어 관행적으로 원고 등 휴대폰 수출업체 들은 종전부터 이용하던 FOB 환산율표를 적용하여 FOB 가격을 계산한 후 신고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 등 동종 업체에서 적용한 위 FOB 환산율표는 중량 기준으로 계 산되는 운임을 금액 기준으로 환산할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것을 가지고 환산한 금액은 실제 운임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 은 관세사, 화주 등 수출입 관계자들 모두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그러

2012-0025260571-75281 4 / 16



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방식의 수출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나 시 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오히려 서울본부세관은 2005. 4. 20. 그 홈페이지에 수 출신고금액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CIF 가격의 경우 운임 및 보 험료를 알고 있는 때에는 실제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FOB 가격으로 신고하고, 실 제 운임 및 보험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요율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고 게 시하고, 그 게시물에 FOB 환산율표를 첨부하기도 하였으며, 관세청은 2008. 2. 2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FOB 환산율표를 이용한 환산가격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운임 및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신고서 운임·보험료 계산 유의사항'을 각 수출 업체에 시달하고 그 무렵 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는 삼성 비자금의혹 관련 특별검사에게 원고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 운임이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운임보다 현저히 과다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원고가 해외 운임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제보하였으나. 위 특별검사는 관세청, 관세사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 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실제 소요된 운임이 아닌 CIF 가격에 일정 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기재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으로 운임의 과대계상 여부를 판 단할 수 없고, 다른 자료를 분석해보아도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들 인정 사실과 함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 태보면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의 2005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른 삼성전자로지텍 주식 회사의 2005년도 매출은 약 8,256억 원이고 피고도 분석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에 반년 간 지급한 운임이 약 1 조 5.727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



가 주식회사 프레시안의 기사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 중 원고가 통상 운임보다 많은 운임을 지급함으로써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와 부당거래 또는 탈세를 하였다거나,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가 실제 수령한 운임과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의 투명한 경영을 꾀하게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 3 내지 8, 22, 23,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미 원고의 비자금 문제가 사회적 이목 을 끌고 있어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허위인 자신의 분석결과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매체인 주식회사 프레시 안에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상에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기 사 게재 전인 2007. 11. 4.경부터 원고와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원고 측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과 원고가 삼성전자로지텍에 지급한 실제 운임 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던 중인 2007. 11 9. 원고의 과장 강정대,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 팀장 강도원, 부장 민충식이 피고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강정대, 강도원, 민충식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던 사실, 나아가 원고 측에서는 일정 수량의 아이템을 지정해 주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운임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제의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가 그대로 게재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



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를 게재되도록 할 당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또한, 성현석으로부터 원고의 2005년도 하반기 수출운임자료의 부석을 의뢰받아 이를 분석하여 준 것일 뿐 피고가 제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 23, 29, 32,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는 성현석으로부터 자료분석을 의뢰받았다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는 1만 원이라는 적은 돈 만 받았고 이에 관하여 성현석은 피고가 꼭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에 형식적으로 1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면서 준 것이고 피고에게 의뢰한 분석은 매우 간단한 작업으 로 피고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위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전에도 저가 수출 문제와 관련하여 MBC와 수회에 걸쳐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성현석은 피고를 몇 번 만났을 때 피고도 수출입신고필증 샘플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였으며 성현석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출 입신고필증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는 성현석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관련 자료를 보유하면서 이에 관한 분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 기에 피고가 성현석으로부터 단순히 자료의 분석을 의뢰받은 것이라면 피고가 주도적 으로 원고 측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 원고 측으로부터 해명을 들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와 분석결과를 제 공하면서 성혀석에게 제보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가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단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2012-0025260571-75281 위반조 병자용 바코드 입니다. 7 / 16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가정적인 표 현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성혀 석에게 '원고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원고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고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원고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 매출 사이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처럼 원고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여 일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앞에서 인정한 명예훼손 사실과 함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는 그 제목이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지급 의혹, [단독] 2005년 6개월 동안 에만 1조 3천억 원...비자금 조성?'임에도 그 내용에는 원고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한 것인지와 같이 그 전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언급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수출입 가격 분석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어 위 기 사를 읽은 사람들은 피고가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워고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는 문 구의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나 문맥상 실제로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읽혀질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전체적 취지도 원고가 탈세 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사의 중점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이 사 건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2012-0025260571-75281 위반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8 / 16



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본 대로 허위사실이므로, 피고가 사용한 일부 가정적 표현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 5, 7, 8, 11,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7호증의 1, 제18 내지 32, 34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당원의 관세청, 국세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명예훼손에 관한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부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아니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진실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예훼손에 있어 피고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2012-0025260571-75281 역면조 및 지용 바코드 입니다. 9 / 16



한 갑 제3 내지 8. 22 내지 25. 29. 32.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인 2006. 10.경 감사원에 미국의 반도체 수입가격이 지나 치게 싸고 그러한 원고의 저가 수출은 이익을 감소시켜 소득세를 탈세하거나 재산의 해외 이전 수단이 되므로 이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감사요청을 하였는데 2007, 2, 23 이러한 감사요청을 이송받은 관세청으로부터 감사원에 수출신고 당시에는 운임이 첫구 되지 않고 중량도 정확히 알 수 없어 기업들이 건별 운임을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의 분석결과 는 원고의 2005년도 하반기 수출운임자료에 관한 것인데 피고는 단 하루도 안 되어 분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쟁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수 출신고필증상의 운임이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 지도 앉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들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에, 원고 측과의 접촉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 이 아니라는 워고 측의 해명을 들었고 자신의 분석결과와 모순되는 삼성전자로지텍 주 식회사의 2005년도 매출액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분석결과가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그 제목부터 원고가 단기간에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관한 분량도 적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 측의 적극적인

2012-0025260571-75281 역반 전 및 자용 비코드 입니다. 10 / 16



해명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 행위에 나아간 점, 그리고 원고의 기업 규모나 기업 이미지의 성가 정도 및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나 이 사건 또는 주식회사 프레시안, 성현석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제기 등을 통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 인 점, 한편 원고가 수출운임 신고시 원칙에 따라 실제 운임을 신고하려는 노력을 하 지 않은 채 오래 전에 폐기된 FOB 환산율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과다 운임 지급 의혹 제기에 대하여 빌미를 제공한 점, 또한 피고가 결국 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실형 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쳐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응보가 이루어 졌고 주식회사 프레시 안 등과의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주식회사 프레시안이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정정보 도를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 여야 할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08.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08.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2012-0025260571-75281 위반조 발자용 바코드 입니다 11 / 16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76		62	
	판사	김형연	7	हे	બ્ત	
	판사	송석봉	3	M	7	

2012-0025260571-75281 의반도 발가용 비코드 웨니다 12 / 16



기 사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

[단독] 2005년 6개월 동안에만 1조 3천억 원 … 비자금 조성?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에 지불하는 운임을 통상가보다 훨씬 높게 지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시한다. 과거 현대자동차가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와 닮았다는 것

반년 간 운임, 1조 3천억 원 과다 지급

<프레시안>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6개월간 수출한 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한 기록과 통관에 쓰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최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항공편을 통해 수출한 건수는 약 13만 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운임을 Kg당 10달러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가 5만 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수출내역 가운데 인도조건이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추려낸 결과다.

삼성전자가 2005년 하반기 동안 운임으로 지불한 비용은 약 16억 8838만 달러(약 1조 5727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한 물량의 총 무게는 2만 8705톤 가량이다. 따라서 운임을 Kg당 10달러로 책정했을 경우(총 운임은 2억 8705만 달러)와 비교하면, 14억 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가 넘는 차액이 발생한다.

물론 'Kg당 10달러'라는 기준도 높은 편이다. 한 건설회사가 지난 1일 미국의 세계적 물류



회사인 UPS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항공 수출할 경우 운임은 Kg당 4달러(3749원)로 나타났다. 전자업계 관계자들도 "수출 운임이 Kg당 10달러를 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국내 회사를 이용할 경우, 최근에는 Kg당 2달러 정도로 거래했다"고 전한다

삼성전자가 적정 운임보다 과다 지급한 금액이 14억 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보다 높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날, 같은 나라, 같은 조건, 같은 상품 수출…운임은 20배 이상 차이

< 프레시안>이 입수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2005년 11월 15일,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가운데 두 장을 골라 비교해 보자. 같은 상품(휴대폰)을 같은 인도조건(CPT)으로 같은 나라(미국)에 수출했지만 관세청에 신고된 운임은 347 달러(Kg당)와 17 달러(Kg당)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체로 운임이 높다는 점외에도 같은 조건에서의 운임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 프레시안>은 최근 입수한 관세청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출입 가격 분석 전문가인 박중석 ITMI 대표에게 의뢰했다. 자료를 검토한 박 대표는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과다 지불한 운임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

실제로 삼성전자가 물류업무를 맡기는 삼성전자로지텍의 2005년도 매출은 약 8256억 원이다. 삼성전자가 반년간 지급한 운임이 약 1조 5727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금



액이다.

박중석 대표는 "삼성전자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매출 사이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이처럼 삼성전자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운임에 관한 내용은 영업 기밀"…"운임 세금계산서 공개할 수 없다"

한편 운임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운임 책정에 관한 내용은 영업 기밀이므로 밝힐 수 없다"면서. "운임 책정이 단지 비용만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삼성전자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매출 사이에 차액이 존재할 가능성, 그리고 이 금액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만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운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통해 실제 지급된 운임을 확인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영업 기밀"이라며 거부했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가 전액 출자하여 1998년 설립됐다. 삼성전자의 기존 물류조직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물류업무만을 대행한다.

2012-0025260571-75281 역본 및 단자용 배고드 입니다 15 / 16



정본입니다.

2012. 8. 30.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양창용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0025260571-75281 역부도 보시용 바로드 합니다 16 / 16